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

(　　)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.

□ (1) 대표신청인

- 성　명 :
- 주민등록상주소 :
- 주민등록번호 :
- 연락처 :

□ (2)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

- 성　명 :
- 주민등록번호 :
- 연락처 :

구분	동의	동의내역
개인정보·금융정보	□	상기 (1), (2)는 (　　)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」, 「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」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
혼인관계	□	상기 (1), (2)는 (　　)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,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

년　　월　　일

(1) 대표신청인 :　　(인)

(2) 예비배우자 :　　(인)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

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

(　　)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,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<혼인으로 구성될 세대>

※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세대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신청인 세대와 배우자 세대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신청인과의 관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(예정) 세대주와의 관계	비고
본인 (필수기재)		-		
배우자 (필수기재)		-		신청인과 동일세대□ 분리세대□
		-		
		-		

년　　월　　일

대표신청인 :　　(인)

예비배우자 :　　(인)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